P. R | 필요 | 필요

15135

자체 통제	지방행정과 최실수	기안처	건설국 하수과 임봉호	전화번호 412	근거서류접수일자

처수담임	하수과장	건설국장	제2부시장	시장
5.5.	5.5.		5/24	

결재 1963. 5. 30

관계 관서명	법제사 시정과장 내무국장 기획조정과장 문서 총무과장

기안 년월일	63. 5. 4	시행 년월일		보존 년한	

분류 기호	서건하 139 (3-9507)	전제통제		종결		정서	기장

경유 수신 참조		발신	

제목 1963 사유지 개간 예정지 결정 고시

1. 다음 미간지는 개간촉진법 제5조에 의거 63. 4. 22자 당시 개간 심의회에서 개간적지로 심의 통과 되었음으로 개간예정지로 결정하고 동법제 6조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하고저 합니다

가 토지소재지

(1) 영등포구지내 5.66정 6건

(2) 성동구지내 20.91정 9건

26.57정 15건 끝

開墾促進法

第5條 (開墾予定地의 決定) 서울특별시장 또는

160 474

287 1500 463

道知事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適地의 調査를 하였을 境遇에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 開墾審議會의 意見을 들어 開墾予定地를 決定한다 但 開墾適地의 全部 또는 一部가 國有未墾地일 境遇에는 中央開墾審議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6條(開墾予定地의 告示) ①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予定地를 決定하였을 境遇에는 다음에 揭記하는 事項을 告示하여야 한다

1. 土地의 所在地 地目、地番、地籍 및 所有者의 住所 姓名
2. 土地利用予定의 概要
3. 工事費 概算額
4. 予定補助率
5. 土地代価予定額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할 때에는 告示와 同時에 그 土地所有者에게도 通知하여

서울특별시

야한다 472

(안 2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제 763 호

개간 촉진법 제 6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 개간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서기 1963 년 6 월 3 일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1.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및 소유자 성명

~~토지의 소재지 별 표~~

구	동	지목	지번	지적	개간예정지 결정적정	토지이용 예정의 개요		공사비 개산액	예정 보조율	토지대 가예정액	토지소유자 성명
영등포	신당	임야	146	1.91	1.91	전		원 40.492	50%이내	원 57,300	영등포신당 서만길
〃	화곡	〃	154	1.44	1.0	〃		13.350	〃	30.000	마포현석동 이두경
〃	〃	〃	136-1	1.05	0.9	〃		12.015	〃	27.000	영등포구 당상동 354~28 김재천
〃	신도림	잡종지	286-3	0.67	0.67	답		46.900	〃	100.050	영등포구신도림동 330~8 이순복
〃	〃	답	325-3	0.444	0.44	〃		30.800	〃	66.600	[illegible] 이원복
〃	구로	〃	685 ~85	0.748	0.74	〃		51.800	〃	111.900	~~영등포동 648~~ 영등포구 본동 산 9 이기회
성동	곡교	임야	23	0.76	0.76	전		10.146	〃	22.800	성동구곡교동 12 심인구
〃	〃	〃	14	1.10	0.95	〃		12.682	〃	28.500	추부지천군 만성면광혜원리 조의경
〃	〃	〃	15	1.5	1.0	〃		13.350	〃	30.000	동대문구숭인동 181 이천수

성동	곡교	임야	16	1.11	0.85	전	11.347	〃	25,500	〃 성동구곡교동
〃	〃	〃	17	0.92	0.75	〃	10.012	〃	22,500	심종화 서대문구정동 34~7
〃	양재	〃	51	10.71	1.0	〃	13.350	〃	15,000	합경자
〃	〃	〃	53	24.61	13.27	〃	177.155	〃	199,050	〃
〃	패치	〃	30	3.59	0.33	〃	4.405	〃	4.950	〃 성동구반포동
〃	반포	〃	157	4.85	2.0	〃	26.700	〃	30.000	석윤균
계			15	55.412	26.57		474.594		770.950	

끝

(안3 고시의뢰안)

수신 | 공보실장 | 발신 | 건설국장

제목 | 1963. 사유지 개간예정지 결정고시의뢰

사유지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으니 고시케 ~~관촉진법 제6조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하여~~ 시보에 게재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유첨 고시원문 1부 끝

안4 통지안

수신 | 영등포구신길동 서만걸 | 발신 | 시장

수신 마포구 현석동 이두경

영등포구 당상동 354~28 김재천

〃 신도림동 330~8 이순복

~~영등포동 [illegible]~~

〃 〃 330~8 이원복

~~영등포동 [illegible] 이병락~~

〃 본동 산9 이기회

성동구 곡교동 12 심인구

충북진천군 만승면광혜원리 조의경

동대문구 숭인동 181 이천수

성동구 곡교동 심종하

서대문구 정동 34~7 함경자

성동구 반포동 석응균

제목 사유지 개간예정지 결정통지서

1. 귀하의 소유인 별지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예정지로 이를 결정하였기 개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합니다

가 귀하가 개간허가를 받고저 할시는 개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63.5.7까지 당시에 개간허가신청서를 ~~구청장~~

~~경우~~ 제출할 것 에개주허가신청서를

나 본기한내 제출치 않을시는 개간의사 없는 것으로 본고주 동법제9조제 4조에 의거 정부가 매수 허가할 것임.

유첨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및소유자주소성명 1부 끝. 끝

開墾促進法

第8條(私有未墾地의 開墾許可)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私有未墾地는 通知日로 부터 45日以內에 그 土地所有者가 申請할 境遇에는 優先的으로 開墾을 許可한다

第9條(國有未墾地의 開墾許可)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國有未墾地 및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가 買收한 未墾地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農家當二町步를 基準으로 하는 限度內에서 다음 順位에 依하여 開墾을 許可한다 但

開墾에 能力이 있는 者에게는 許可面積을 制限하지 아니할수 있다

一. 零細農家

二. 一般農家

三. 其他 營農의 能力이 있는 者

第14條 (私有未墾地의 買收) ① 다음 各号의 一에 該當하는 私有未墾地는 政府가 이를 買收한다

1. 土地所有者가 第6條의 規定에 依한 通知日로부터 45日以內에 開墾許可申請을 하지 아니한 土地

2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開墾許可條件에 明示된 期日內에 工事를 着手또는 竣功하지 아니한 土地 但 開墾許可地中 이미 開墾된 部分의 土地가 있을 境遇에도 이를 包含하여 買收한다